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임헌경 의원 외 6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12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3. 제안이유

충북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규정(안 제2조)

나.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화학물질관리 이행보고서 작성 및 공개(안 제11조)

마. 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바. 재정지원 등(안 제13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북 도내에는 청주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 등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화학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15.1.1.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는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책무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4.11.10.~11.30.)를 통해 담당부서, 도민, 자문위원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

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서 정한 책무규정에 따라 관련 시책 수립 등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